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67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6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20 선고 2001나174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A 담당변호사 심BA외 4인)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20. 선고 2001나174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은 처분문서인 신용보증서의 ‘개별보증’이란 문언에 따라 최초의 통장대출금 1,700,000원만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피보증 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보증책임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방법란에는 개별보증으로 되어있지만 그 문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업통장 대출의 연장된 대출기한 만료시의 잔존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신용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출행위가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다른 대출취급에 해당하여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